C - 84 - 2013

(5) 트러스거더 조립 시 하부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, 조립이 완료된 후에는 부재의 강도를 체크하여야 한다.

8.3 가설벤트 설치(필요시)

- (1) 가설벤트 설치공사 시에는 사전에 가설벤트 위치의 지반 지내력을 확인하고 부등침하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(가) 버림 콘크리트 타설
 - (나) 필요시 하부에 H 빔 설치
- (2) 가설벤트는 작업시의 하중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 하여 조립도의 순서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.
- (3) 가설벤트 설치 시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설치 계획서 작성 시 인원, 장비, 자재 반입일정 및 수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(4) 가설벤트를 반입하여 현장에 적재 시 전도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2단 이상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.
- (5) 가설벤트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균열, 부식, 휨 및 단면 부족 등의 결함이 있는 자재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- (6) 기초가 경사진 경우에는 가설벤트의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7) 최종적으로 가설벤트가 조립, 설치된 경우에는 레벨을 측정 점검하고 볼트 의 체결상태 및 위치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(8) 가설벤트 설치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가설벤트 설치 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.
- (10) 가설벤트 설치 시 낙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부에 근로자의